탄원서

통일교 측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사건번호	2026도6826
피고인	김건희
담당 법원·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단계	상고심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공적 청탁과 고가 금품이 관련된 사건은 시민의 신뢰를 흔듭니다. 저는 그 우려를 알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때에는 물품마다 어떤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정확히 구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행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판단을 먼저 옳다고 단정하기보다, 왜 결론이 바뀌었는지 법률에 따라 끝까지 심리하여 주십시오.

2. 원심이 인정한 중대한 책임에 관하여

2026년 4월 28일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2022년 4월경 첫 샤넬 가방 수수 부분까지 유죄로 보았습니다. 첫 물품의 경우에도 통일교 측 청탁과 포괄적인 대가관계, 피고인의 묵시적 인식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 판결 이유를 지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1심이 구체적인 청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던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달리 평가된 만큼, 법률상 대가관계의 인정과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신중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사건에 관여한 경위와 실제 실행 행위

공개된 사건 경과에 따르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이 여러 시점에 걸쳐 전달된 혐의가 심리되었습니다. 제공자가 기대한 이익과 피고인이 실제 인식한 청탁의 내용은 법률상 따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물품의 종류, 제공 시기, 전달 경로, 관계자의 발언을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나 행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곧바로 귀속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실제 청탁을 알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역시 빠짐없이 살피는 균형 있는 판단을 간청드립니다.

4. 피고인의 실제 지시와 그 결과

항소심은 2022년 4월 7일의 첫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청탁과 대가관계, 묵시적 인식을 인정해 1심 무죄를 유죄로 변경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실제 알선의 성과가 있어야만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첫 가방과 이후 물품을 받게 된 경위·시점·전달자의 말·피고인의 인식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이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한 기준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별 사정

첫 샤넬 가방과 그 이후 전달된 가방·목걸이 등의 제공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항소심은 첫 가방까지 알선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법률적 판단을 가볍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초 수수 시점에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뒤의 관계에서 드러난 인식을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는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무원에게 알선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선의 명목과 금품의 대가관계가 행위별로 인정되는지, 전체적·포괄적 관계를 인정한 법률 기준이 적절한지가 정확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6.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 이후 태도

피고인의 해명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사실만으로 한쪽을 더 불리하게 보지 않고 기록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대가성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황도 함께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모든 물품을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범행이 증명된 물품의 책임은 지되, 그렇지 않은 물품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7. 개인별 양형 사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품이 고가였다는 사정과 공적 청탁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비난 가능성과 형벌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물품과 뒤이은 물품의 수수 경위가 서로 다르다면, 각 물품의 대가성 인식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이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알선에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이미 형에 반영되었다면 이를 새로운 감경 사유처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물품의 범위 자체가 법률상 달라지는 경우에만 형벌의 무게가 다시 정확히 조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8.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 실제로 성공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또한 구체적 청탁이 단 하나의 서류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사정 전체에 따라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법리가 넓게 적용되는 만큼, 최초 가방 수수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이후 정황을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에 법률상 오해가 없는지 상고심의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법률에 따라 인정된 부분은 책임을 지되, 추정만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부께 호소합니다. 공적 신뢰가 걸린 금품수수 사건의 엄중함을 외면하지 마시되, 물품별 청탁과 대가성 인식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정확했는지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로 증명된 부분에는 합당한 책임을, 법률상 판단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시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 탄원을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참고자료

사건 경과 및 공개 판단

1. 대한민국 대법원 | 주요 재판 안내: 2026도6826 전원합의체

2026. 10. 22. · 같은 상고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를 함께 심리한 경과.

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2

2. 연합뉴스 | 취임 전 첫 샤넬 가방 유죄로 변경된 이유

2026. 4. 28. · 1심 일부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변경: 포괄적 대가관계·묵시적 청탁 인식.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8177300004

3. 연합뉴스 |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배당

2026. 5. 26. · 항소심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도이치 일부 유죄와 통일교 부분 유죄 확대, 명태균 부분 무죄 유지.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6038700004

4. 연합뉴스 | 도이치·통일교 관련 항소심 선고 및 양형 사정

2026. 4. 28. · 도이치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 전부 유죄, 여론조사 무죄 유지 및 가담 기간·주도 여부 등 양형 사정.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8155751004

5. 뉴스핌 | 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두 번째 심리

2026. 10. 15. · 3대 의혹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및 병합된 혐의 구성을 설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756

참고자료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2025. 7. 2. 시행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의 명목과 대가관계. 행위시 법률의 확인 필요.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7…

7.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2017도21248 판결(알선·대가관계의 판단)

2023. 12. 28. · 알선과 대가관계는 수수 경위·시기 등 전체 사정을 토대로 검토하며, 계약 형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법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887

8.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2026. 10. 2. 시행 · 상고이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및 제한적인 사실오인·양형부당 사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3&lsiSeq=29…

9.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2026. 10. 2. 시행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법정 기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7&lsiSeq=29…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2026. 10. 2. 시행 ·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

인용된 공개 보도의 판결 설명은 판결문 전문 또는 상고이유서 원문과 같지 않습니다. 형벌법규는 각 행위 시기의 적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